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2019. 1



1.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 현 황

- 전년에 비해 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인원에 중소 1,100~1,200만원,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800만원,
 그 외 기업 4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20.12.31.까지)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기간제 등 근로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 그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인원에 중소 700~770만원, 중견 45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고용시장 한파로 인해 신입사원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로 전체 신입 채용 지원자의 42%가 30대 이상이며, 실제 최종 입사에 성공한 30대 신입사원의 비율 또한 38.4%에 달함
 - 30대 신입사원 비율은 중소기업 39.9%, 중견기업 32.6%, 대기업 25.4% 순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신입사원의 연령이 높아짐
 - * 신입사원 채용 기업 조사, '19.1, 취업포털 사람인
- 중견기업의 '17년 신규 채용실적은 기업당 평균 63.6명으로 이중 만 15세~34세에 해당하는 인원은 26.4명에 불과, 고용증대세제의 청년 기준인 29세로 한정하면 청년 채용은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2017년 기준 중견기업 실태조사, '18.12,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높아지는 신입사원의 연령을 반영하고, 타 법령 개정 추세와 발맞춰 고용증대세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년 범위의 확대가 필요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고용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동법 시행령 제8조의2를 통해 정부가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지원토록 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은 제81조를 통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하면서 가입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는 등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아지는 추세

□ 건의사항

- ㅇ 고용증대세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연령 범위 확대
 - (현행) 15~29세 ⇒ (건의) 15~34세로 확대

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범위 개선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현 황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투자, 근로자 임금증가분, 상생 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의 65%(투자를 제외할 경우 1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 부과(19.12.31까지)

-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혁신성장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 수립 및 대규모 투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나,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라 내부 유보금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되어 투자심리 위축
 - 설비투자를 진행한 중견기업의 평균 투자실적은 103억원*으로 이는 중견기업 평균 영업이익 92억원**을 상회
 - * 전체 중견기업 평균 설비투자실적 : 65억원, 투자실적 있는 기업 평균 설비투자 실적 : 103억원(2016년 기준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 2016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통계청
 - 중견기업은 자금조달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68.1%*로 높고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일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유보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초기 중견기업 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임
 - * 중견기업 자금조달원: 내부 유보자금 68.1%, 시중은행 차입 23.2%, 정부정책자금 활용 2.5%, 회사채 발행 1.6% 順(2016년 기준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조특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 법인세액,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등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항목에 배당금 추가
 -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되면서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배당을 제외
 - * 舊 기업소득환류세제('17.12.31까지 적용)의 경우, 배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소득에서 차감
 - 기업의 배당은 내부 유보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함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당기소득 차감항목에 포함하여 활발한 배당 촉진 필요
- (조특령 제100조의32제6항제1호)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에 해외 직접투자 자산 포함 필요
 - 산업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을 R&D, 수출, 인력 등 세계적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2018.2.5. 발표)'을 정책을 추진
 - 중견기업의 '18년 해외투자 계획금액은 기업당 평균 13.4억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12.2%에 달하며, 이는 특히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 전통 주력 제조업 에서 높게 나타남
 - * 2018년 중견기업 경영전망조사('18.2, 중견련 내부자료)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산을 기계장치 등 자산 투자액에 포함하여 당기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의내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시 당기소득 차감범위에 배당금 포함
 - (현행) 배당금 제외⇒(건의) 배당금×50%*
 - * 舊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게 적용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시 해외직접투자금액을 기계장치 등 자산 투자금액에 포함
 - (현행) 국내사업장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건의) 해외직접 투자를 통해 취득한 해외 사업용 자산도 포함

3.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35조의4

□ 현 황

-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21.12.31까지)
 - (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 인세에 대해 과세이연(주주의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
 - (지주회사) 현물출자 받은 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계정조정으로 계상(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

- 주주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액을 해당 주주의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하는 것을 넘어, 지주회사가 자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도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 부담 발생
 - 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액*과 지주회사의 자산조정계정**은 모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으로 그 원천이 동일
 - *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 출자 주식의 장부가액
 -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

- 이러한 이중과세 방식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기업역량을 위축시킴
 -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핵심사업을 처분하여, 핵심사업이나 장래성이 유망한 신산업 발굴에 집중하려 하나 현행 세제 하에서는 비핵심 자회사 매각시 주주의 과세이연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요소로 작용
- 조특법 제38조의2는 '10년 법령 개정 이전에는 과세이연 규정임이 명확하였으나, 동 법령 개정시 과세이연과 이월과세를 혼용하여 규 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
 -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규정만 있을 뿐 이월과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물출자한 주주와 출자받은 법인에게 이중과세하는 사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움
 -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즉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에는 자산조정계정을 소멸시키거나(건의사항 1안)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건의사항 2안)이 바람직함

<2011년 기획개정부 발간 개정세법 해설자료>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 중단
(<u>과세를 이연받은 자회사 주주에게</u>	(<u>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지주회사에</u>
<u>과세</u> *)	<u>과세</u> *)
* 이연받은 양도세·법인세 상당액에	*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던 자회사 주식을
대해 과세	시가로 조정하고 차액을 익금산입

- 동일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던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법령개정('11년, '17년)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모두 개선
 - *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모두 과세→분할법인만 과세(법인세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 ** 완전자회사 주주·완전모회사 모두 과세→주주만 과세(조특법 제38조)
- 주주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주주와 지주회사의 이중 과세 문제는 지주회사에 대한 혜택 축소와 무관하며 이중과세라는 세법 본연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이중과세 개선
 - (1안) <u>사후관리기간(2년) 경과 후 자산조정계정 소멸</u> (단, 사후관리 기간 경과 전에는 현행과 같이 자회사 주식처분시 자산조정계정 익금 산입)
 - (2안)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처분시 취득원가 산정방법 개선 : 지주회사가 주주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과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u>주식 양도시 다른 방식으로</u>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4.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중, 대표이사 요건 완화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3항

□ 현 황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전체 가업기간 중 50% 이상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재직 후 승계하여야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제점

- 피상속인이 고령이나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거나 상속예정자가 대표이사로 등록한 기업은 가업 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성장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고문 역할 등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기업은 기준 미충족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영국, 독일 등은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요건을 두지 않으며, 미국도 피상속자가 경영에 중대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설정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음
-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을 고용한 경우 가업상속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기업의 영속성이 침해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함

□ 건의사항

○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최대주주 요건**으로 완화

5.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완화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3항

□ 현 황

-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상속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 지분율을 충족해야 하고, 단 한번이라도 50%(상장 30%)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음(국세청 예규, 재산세과-510, 2010.7.14.)

□ 문제점

- 기업상장을 위한 투자유치(벤처투자)나 기업공개(상장) 등의 경우에는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 하락은 불가피
 - 현행 규정은 최대지분율 유지를 위해 투자유치와 성장을 포기하고 현상유지만 하려는 또 다른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될 우려

□ 건의사항

○ 피상속인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을 40%(상장법인 20%) 이상 기업으로 완화 필요

6. 가업승계 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 현 황

-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주식(상장, 비상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 물납요건 :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 문제점

- 상속 및 증여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구성되어 상속세 납부를 금융재산으로 강제할 경우 물려받은 주식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영권 방어가 어려움
- 현행 제도는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여 상속인 사정에 따라 유동성 위기 유발할 수 있으며, 경영권의 포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부(富)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상속인의 자금유동성을 일정부분 담보해주기 위하여 금융재산의 일정비율(예)80%) 이상 상속세를 납부하면 물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마련

7.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별표

□ 현 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유지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70~100%를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 사후관리요건 : ① 가업용 자산의 80%를 보유할 것, ② 주된 업종을 유지할 것,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근로자수 기준 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거나 상속 이후 10년간 평균 근로자수가 기준고 용인원의 120%에 미달하지 않을 것

- 상증세법상 예외가 일부 인정되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종전환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 생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실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이 저조함
 - * 엄격한 요건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실적 미미 (한국 62건, 독일 1.7만건)
- ●히, 우리나라는 '경공업→중공업→전자산업→IT산업'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업종전환에 실패하고 도태
 - 1955년 당시 10대 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이었으나, 1970년대 철강, 조선, 전자, 화학, 기계 등으로 산업구조가 전환 되면서 삼호무역, 동명목재 등 장수가 기대되던 여러 유력 기업이 사라짐

-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영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 10년간 자산 유지
 및 업종전환 제한, 고용인원 및 대표이사직 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
 으로 인하여 기업 생존을 저해하는 이율배반적 상황 초래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0년 내에 업종전환이나 자산의 처분,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 환경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이 충족되는 이상 자산유지 요건을 엄격히 관철시킬 필요성 적음

□ 건의사항

○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현행 10년 ⇒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여
 기업 운영의 신축성 보장

* 독일 : 상속세의 85% 공제시 사후관리기간 5년, 100% 공제시 7년 일본 : 사후관리기간 5년

(고용유지 요건 개선) 근로자의 수가 아닌 독일식 총급여액 유지요건 도입

* 독일 : 85%공제 시 5년간 총급여 400% 유지, 100% 공제시 7년간 총급여 700% 유지)

 (업종 및 자산유지 요건 완화) 업종전환 및 자산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 하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업종의 제한을 현행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